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박성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16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04일

발 의 자: 박성연,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유만희, 이종태,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법적 체계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법적 체계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